

KOIMA 시장조사대행서비스약관

정보제공자(한국수입협회)와 시장조사대행서비스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시장조사서비스대행의 정의

한국수입협회(이하 “협회”에서 본 지사 및 주한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하여 국내외업체/기관이 요청한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 정보서비스이다.

2. 서비스의 성격 및 제공범위

가.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협회는 본 지사에서 C/L 발송 및 전화문의, 연구원의 실질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를 제공하며, 1 회 조사로 종료된다. 바이어정보는 거래 성약이나 바이어로부터의 회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시장성 조사도 판단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. 이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나. 시장조사결과는 한국 HWP 형식으로 국문 또는 상황에 따라 영문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의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다. 다만 타 언어로 번역 요구 시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실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3. 조사기간

조사대행은 업무의 성격과 정보 확보기간에 따른 일정기간 경과가 불가피하며, 조사 분야의 특이성 및 난해성, 업무의 일시 집중 등으로 일정기간 조사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. 이에 따라 협회는 상황발생시마다 의뢰업체와 회신기한 및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4. 서비스 종류 및 조사수수료

가. 서비스 안내서 참고

5. 조사수수료 및 조사경비 부담

조사수수료는 기본조사비용(인건비, 통신비 등)의 일부이다. 기본조사비용과는 별도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구입비(보고서첨부), 발송비 등의 부대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6. 환불 및 재조사

가. 협회 내부여건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시장성 취약으로 조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, 조사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을 환불한다.

그러나 “관심 바이어조사”에서 시장성을 조사한 결과, 시장성 취약 등으로 바이어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성 정보만 제공하고 바이어조사 등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환불한다.

나. 당초 의뢰내용과 다르게 조사되었거나 조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용자는 협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다. 이용자가 재조사결과를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경우 서면(Fax 또는 e-mail)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. 협회는 조사결과에 신뢰도를 검토하며, 검토 후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, 동 조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한다.

라. 이용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회신 받은 후 15 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, 재조사 및 추가적인 정보요청을 할 수 없다.

7. 이용자의 의무

이용자는 조사에 필요한 국/영문 정보를 협회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, 특히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탈로그나 상품설명서 등을 협회로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.

8. 조사신청 및 착수

협회에 시장조사대행서비스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1 부씩 제출하고 조사내용에 관하여 쌍방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, 조사기간은 수수료 납부확인 시점부터 기산한다.

9. 조사의 제한

협회는 철저히 폐쇄적인 시장에 대한 조사, 상도덕 또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는 거절할 수 있다.

10. 정보제공자의 면책

조사결과는 서비스 이용자의 업무수행에 참고하는 자료로만 사용하고,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협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1. 조사 결과보고서 비공개 기간

협회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이용자에게 송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90 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
